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바로고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회사 바로고앤과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방법: 주식회사 바로고가 주식회사 바로고앤을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주식회사 바로고 1 : 주식회사 바로고앤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주식회사 바로고앤

나. 본사 소재지: 서울 강남구 언주로134길 32

4. 합병기일: 2023년 1월 2일

5. 주식회사 바로고와 주식회사 바로고앤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2022년 11월 4일 ~ 2022년 11월 18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2022년 11월 18일까지 주식회사 바로고에 제출 (주소: 서울 강남구 언주로 134길 32)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합병을 진행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바로고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바로고와 주식회사 바로고앤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 :

2022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022년 11월 4일

주식회사 바로고

대표이사 이태권